

[별지 제4호서식]

2026년 3월 26일 제1회  
이 사 회 회 의 록

창 원 레 포 츠 파 크

[별지 제4-1호서식]

2026년 3월 26일 제1회  
이사회일시·출석·심의내용

○일 시 : 2026년 3월 26일(목요일)

자 : 15시 00분

지 : 16시 00분

○장 소 : 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

○총이사수 : 8인

○감 사 : 1인

○출석이사수 : 8인

○감 사 : 0인

○의 장 : 장기팔 이사

의장의 2026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이어 이사장(관계직원)이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(별첨)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.

2026년 3월 26일 16시 00분

창원레포츠파크

## 의안목록표

의안번호	제1호	제안부서	총무회계팀
------	-----	------	-------

건명 :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

의결내용 : 원안가결

주요내용

○ 전년대비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5회계연도 결산		2024회계연도 결산		증감	
	예산액(A)	결산액(B)	예산액(C)	결산액(D)	예산액(A-C)	결산액(B-D)
합계	33,201,224	32,039,805	31,541,319	30,496,408	1,659,905	1,543,397
사업예산	29,806,747	28,754,118	29,887,648	28,853,014	△80,901	△98,896
자본예산	3,087,555	2,979,580	1,634,051	1,623,774	1,453,504	1,355,806
이월예산	306,922	306,107	19,620	19,620	287,302	286,487

○ 대행사업비 결산보고서

- 총괄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(A)	징수결정액	수납액	지출액(B)	지출잔액 (반납액 = A-B)	비고
합계	33,201,224	32,039,805	32,039,805	32,039,805	1,161,419	
사업예산	29,806,747	28,754,118	28,754,118	28,754,118	1,052,629	
자본예산	3,087,555	2,979,580	2,979,580	2,979,580	107,975	
이월예산	306,922	306,107	306,107	306,107	815	

- 사업예산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(A)	징수결정액	수납액	지출액(B)	지출잔액 (반납액 = A-B)	비고
합계	29,806,747	28,754,118	28,754,118	28,754,118	1,052,629	
대행사업 수익	29,480,337	28,440,535	28,440,535	28,440,535	1,039,802	
보조 금익	326,260	313,500	313,500	313,500	12,760	
예금이자	150	83	83	83	67	

- 자본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(A)	징수결정액	수납액	지출액(B)	지출잔액 (반납액 = A-B)	비 고
자 본 적 입 수	3,087,555	2,979,580	2,979,580	2,979,580	107,975	

- 이월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(A)	징수결정액	수납액	지출액(B)	지출잔액 (반납액 = A-B)	비 고
이 월 예 산 수	306,922	306,107	306,107	306,107	815	

- 자금결산

(단위: 원)

수 입	금 액	비 고	지 출	금 액	비 고	
전 기 이 월 금	964,743,166	* 전 년 도 이 월 액	이 월 예 산 지 출	306,106,680		
			수 익 적 지 출	28,754,117,809		
수 익 적 수	29,060,224,489	* 사 업 예 산 관 련 이 자 수 입 포 함	자 본 적 지 출	2,979,580,370		
			예 수 금 등 지 출	92,424,370,552		
자 본 적 수	2,979,580,370	* 자 본 예 산 관 련	차 기 이 월 액	979,330,891	자 본 금	510,707,350
					미 환 급 예 수 금 등	468,614,151
사 고 이 월 금 액	0					
도 비 미 반 납 액	9,390					
예 수 금 등 수	92,438,958,277					
합 계	125,443,506,302		합 계	125,443,506,302		

의안번호	제2호	제안부서	기획홍보팀
------	-----	------	-------

건명 :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의결내용 : 원안가결

주요내용

○ 예산규모 : 33,244,428천원 【기정예산 대비 ↑ 30,000천원】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(A)	기정예산(본예산)(B)	증감(C=A-B)	비고
<b>계(a+b)</b>	<b>33,244,428</b>	<b>33,214,428</b>	<b>30,000</b>	▶ 증액 : 111,000천원 ▶ 감액 : 81,000천원
특별회계 대행사업비(a)	25,893,104	25,893,104	-	금회추경 해당없음
경륜운영 대행사업비	24,000,000	24,000,000	-	
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	1,893,104	1,893,104	-	
<b>일반회계 대행사업비(b)</b>	<b>7,351,324</b>	<b>7,321,324</b>	<b>30,000</b>	▶ 증액 : 111,000천원 ▶ 감액 : 81,000천원
공영자전거	6,391,500	6,391,500	-	▶ 증액 : 81,000천원 ▶ 감액 : 81,000천원
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	270,150	270,150	-	금회추경 해당없음
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	303,003	303,003	-	
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	356,671	356,671	-	
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	<b>30,000</b>	-	<b>30,000</b>	▶ 증액 : 30,000천원

○ 누비자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증감 조정

(단위: 천원)

기정예산(A)	증감 조정<세목 기준>			최종예산(E=A-D)
	증감(D=B-C)	증액(B)	감액(C)	
6,391,500	<b>0</b>	81,000	81,000	6,391,500

- 증·감액 주요내용

(단위: 천원)

구분	추경액	세목	주요내용<세목기준>
증액	<b>81,000</b>	자산취득비 (81,000)	○ 누비자시스템 정보보호 보안장비(IPS) 구입 신규편성(81,000천원)
감액	<b>81,000</b>	자산취득비 (△81,000)	○ 공영자전거 누비자 구입 낙찰 잔액 감액(81,000천원) - IPS(외부침입 탐지·차단 기능) 2대 구입

○ 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 대행사업비 신규예산 편성

(단위: 천원)

기정예산(A)	증감 조정<세목 기준>			최종예산(E=A-D)
	증감(D=B-C)	증액(B)	감액(C)	
0	<b>30,000</b>	30,000	0	30,000

의안번호	제3호	제안부서	총무회계팀
<p>건명 :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</p> <p>의결내용 : 원안가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원 휴식권 보장 등 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 생산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29조의5(장기재직휴가)제1항제1호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통한 조직 생산성 강화를 위해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</li> <li>※ 기존 1 ~ 3호는 2 ~ 4호로 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정부의 「가족친화인증」 재인증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62조(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) 일부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상위 법령인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2조 반영</li> <li>▶ 조문 제목 변경(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⇒ 직장 내 성희롱 금지)</li> <li>▶ 現 조문을 제2항으로 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명문화를 위한 제1항 신설</li> </ul> </li> <li>- 제64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)제1항 일부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상위 법령인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 반영,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대상의 명확화,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원칙 선언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		

의안번호	제4호	제안부서	총무회계팀
<p>건명 :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</p> <p>의결내용 : 원안가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6조의3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22조의3 반영, 기존 제36조의3(육아휴직)을 제36조의4로 하고, 제36조의3(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)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, 허용 예외 및 후속 조치, 단축 근로조건, 근로자 보호 조치 등 명문화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기존 제36조의3을 제36조의4로 조문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문 변경되는 제36조의4제1항 중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’ 를 ‘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’ 로 개정</li> <li>- 조문 변경되는 제36조의4제5항을 제8항으로 변경</li> <li>- 조문 변경되는 제36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자의 단기 육아휴직의 의무 허용 및 사용 단위 및 기간 등 명문화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제36조의5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)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</li> </ul> </li> </ul>			